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7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3. 19.
4. 회부일자 : 2020. 3. 20.

II . 제안이유

-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편성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액 (A)	본예산액 (B)	증감(A-B)		추경예산 재원구분	
		금액(C)	비율(C/B)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등)
10,123,853	10,084,661	39,192	0.4%	25,229	13,963

2.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금액	비율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합 계		10,123,853	100.0	10,084,661	39,192	0.4	25,229	13,963	
중앙 정부가 전수입	보 통 교 부 금	5,134,560	50.7	5,109,331	25,229	0.5	25,229	0	
	특 별 교 부 금	121,782	1.2	110,947	10,834	9.8	0	10,834	
	국 고 보 조 금	144,440	1.4	141,811	2,629	1.9	0	2,629	
	특 별 회 계 전 입 금	549,314	5.4	549,314	0	0.0	0	0	
	계	5,950,095	58.7	5,911,403	38,692	0.7	25,229	13,463	
자치 단체 이 전 수 입	법 정	시 도 세	1,400,083	13.8	1,400,083	0	0.0	0	0
		담 배 소 비 세	253,957	2.5	253,957	0	0.0	0	0
		지 방 교 육 세	1,644,977	16.2	1,644,977	0	0.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3,822	0.1	13,822	0	0.0	0	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00,065	1.0	100,065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8,660	0.1	8,660	0	0.0	0	0
		소계	3,421,564	33.8	3,421,564	0	0.0	0	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37,412	0.4	36,912	500	1.4	0	500
		기초자치단체	0	0.0	0	0	-	0	0
		소계	37,412	0.4	36,912	500	1.4	0	500
	계	3,458,976	34.2	3,458,476	500	0.0	0	500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9,899	0.1	9,899	0	0.0	0	0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413	1.1	106,413	0	0.0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321	0.1	5,321	0	0.0	0	0	
자 산 수 입		15,262	0.2	15,262	0	0.0	0	0	
이 자 수 입		7,101	0.1	7,101	0	0.0	0	0	
금 용 자 산 회 수		22,010	0.2	22,010	0	0.0	0	0	
기 타 수 입		25,427	0.3	25,427	0	0.0	0	0	
계		181,534	1.8	181,534	0	0.0	0	0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	0	0	
전 년 도 이 월 금		523,349	5.2	523,349	0	0.0	0	0	

3.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금액	비율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합 계		10,123,853	100.0	10,084,661	39,192	0.4	25,229	13,963	
인 건 비	공 무 원 인 건 비	4,727,204	46.7	4,727,204	0	0.0	0	0	
	사립학교인건비	1,343,297	13.3	1,343,297	0	0.0	0	0	
	계	14,851,057	60.0	14,811,865	0	0.0	0	0	
경 상 비	기관운영비	29,757	0.3	29,757	0	0.0	0	0	
	학교운영비	901,800	8.9	901,800	0	0.0	0	0	
	계	931,557	9.2	931,557	0	0.0	0	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인 적 자 원 운 용	28,411	0.3	28,411	0	0.0	0	0
		교수학습활동지원	508,342	5.0	507,032	1,310	0.3	1,310	0
		교 육 복 지 지 원	1,358,283	13.4	1,355,253	3,030	0.2	3,030	0
		보건/급식/체육활동	71,516	0.7	40,905	30,611	74.8	16,648	13,963
		평 생 교 육	28,099	0.3	28,099	0	0.0	0	0
		직 업 교 육	812	0.0	812	0	0.0	0	0
		교 육 행 정 일 반	107,262	1.1	107,262	0	0.0	0	0
		소 계	2,102,725	20.8	2,067,774	34,951	1.7	20,988	13,963
	시설사업비	학 교 신 증 설	159,889	1.6	159,889	0	0.0	0	0
		일 반 시 설	645,260	6.4	645,260	0	0.0	0	0
급 식 시 설		90,034	0.9	90,034	0	0.0	0	0	
소 계		895,183	8.8	895,183	0	0.0	0	0	
계		2,997,908	29.6	2,962,957	34,951	1.2	20,988	13,963	
지방교육채및BTL상환		109,646	1.1	109,646	0	0.0	0	0	
예비비및기타		14,241	0.1	10,000	4,241	42.4	4,241	0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74호로 제출되어 2020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지원과 학교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긴급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감염이 국내 확산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의 긴급돌봄을 위한 재정지원과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보다 39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10조 1,238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3~8)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에 따른 증가액 252억 2천 9백만원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108억 3천 4백만원 등 총 360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통보에 따른 26

억 2천 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방역물품 지원의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증가규모는 391억 9천 2백만원으로,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예비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13~16)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범유행성으로(Pandemic)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1) 따른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42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예비비 편성범위(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예외로서 향후 재난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100억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이미 38억 3천 6백만원을 집행한 상황임

1)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감안한다면 향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표] 2020년도 예비비 지원 내역(3.18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예비비지출 사업명	지출결정일	총 지원액	코로나19 관련지출
1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송정중 위험시설 개선	01-30	521,982	
2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서진학교 안전시설 보강	01-30	509,258	
3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02-18	633,772	633,772
4	동부교육지원청	송곡여중 옹벽보수 보강 및 기타공사	03-13	164,527	
5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개선 ²⁾	03-13	505,359	505,359
6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유치원 방역 소독	03-13	83,643	83,643
7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코로나19 긴급 대응 의료 인력 지원 ³⁾	03-16	320,092	320,092
8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방역 소독	03-12	1,301,580	1,301,580
9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제작	03-17	14,040	14,040
10	유아교육과	유치원 긴급돌봄 급간식 운영비	03-17	444,900	444,900
11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학교체육관및수영장 방역소독비	03-18예정 (예비비승인 결재는완료)	533,000	533,000
합계				5,032,153	3,836,386

2) SW교육지원(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21~24)

○ 동 사업예산은 서울형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

- 2) 동 예비비 지원은 현재 학교홈페이지가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라 향후 학사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안내 그리고 가정학습에 수반되는 과제안내 등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가 폭주하여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임.
- 3) 전체 784개 유치원 중 100개의 거점유치원을 선정하여 주변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또는 보건교사자격증 보유자)을 채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임.

산의 장기화로 학교 휴업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가정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형 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운영 경비와 업무 지원 실무사 인건비 등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현재 3차례에 걸쳐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가정학습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지원단과 원격지원단을 통해 온라인교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학 연기에 따라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통한 학습의 연속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부 보도자료,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2020.3.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샘카 운영비 2억 1천만원의 산출기초 단가인 1천 4백만원의 경우 현장지원단 지원버스 임차료 외에도 노트북 및 에그 임차료와 IT기술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지원단 지원버스 임차료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명시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

3) 긴급돌봄 지원(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25~35)

-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조치로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케어 운영 급간식비로 8억 1천만원을,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별 교원 참여 수당 및 대체인력 수당과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3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현재 휴업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가 온종일 이어지고 있는 바, 이는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적인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예산은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4) 학교보건관리(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39~52)

① 목적지정재원 사업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지정재원 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5) 이 중 샘카 운영비(현장지원단 지원버스) 지원단가 1,400만원은 전세버스 임차료 150만원과 노트북 및 에그 임차료 1천만원 그리고 IT기술자 인건비 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입을 위해 52억 5천 7백만원(단 재적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 674교)과 각급 학교별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44억 1천 1백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입금을 재원으로 한 방역물품 구입비 5억원 등 총 101억 6천 8백만원을 학교감염병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② 일반재원 사업

- 교육청은 목적지정재원 사업 외에 일반재원을 활용하여 600명 미만의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695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해 5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각급 학교별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12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마스크 구매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확정분 등을 재원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⁶⁾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공적 마스크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책으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의 구입 등을 검토하여 유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⁷⁾

향후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공적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①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② 요일별 구매 5부제, ③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7)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2020.3.16

○ 한편 교육청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의 양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공 마스크로 긴급히 현물로 조달하여 학생에게 공급하기로 보도자료(2020.3.16.)를 낸 바 있으나,

오늘 아침 YTN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필터의 국산한지 오염물질 차단율이 9%, 중국산 필터의 차단율이 10%, 그리고 KF94에 맞먹는 필터의 차단율이 50%, 정식 마스크생산업체의 교체용 필터 차단율이 85%에 나타나고 있어 단기 간내 필터확보를 할 경우 문제 있는 필터가 공급될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3.16 보도자료) 공공무상마스크 : 현재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정부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공 무상마스크로 지급할 계획으로 학생 1명당 기본3개(개당 필터4장 포함)에 추가 여유분 1개를 제공하며, 추가 여유분 1개는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학교 비축용으로 활용함.

현재 완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성능 검사 대상이지만, 부착형 필터만 따로 팔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필터 교체용 마스크에 대한 최소 권장 기준·규격 기준이 마련된 후 구입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